

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·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개정안, 13일 국무회의 의결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8월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·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-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개정안은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고 있는 토익·토플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.
 - 이는 국정과제(91.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)와 '24년 경제정책 방향(1.4)에 따른 조치로, 영어성적 인정기간 확대는 개정 시행령의 공포·시행일(8.20) 이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된다.
 - 구체적인 영어성적의 인정범위, 제출방법 등은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별도의 공고(8.20)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.

-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개정안은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(국토교통부 산정·공시)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(시·군·구)의 검토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.
 - 표준부동산(표준지·표준주택) 공시가격 산정절차와 같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에도 지자체가 시·군·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(안)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한다.

-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“이번 개정으로 영어성적의 인정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제적·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”이라며,
- “이와 함께,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 절차가 신설되어,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	책임자	과 장	이유리 (044-201-3422)
		담당자	사무관	김부병 (044-201-3423)
			사무관	윤상원 (044-201-3426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